

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나정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-518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11. 18.

발의자 : 나정숙 의원 외 14 명

1. 제정이유

- 월경용품을 필요로 하는 안산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월경용품을 지원하여 건강권, 학습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 향유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~ 제2조)
- 지원대상 및 방법을 규정함 (안 제3조)
- 지원계획의 수립의무를 규정함 (안 제4조)
-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교육 및 홍보,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7조)
-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 ~ 제9조)

3. 제정 조례안 : 붙임1

4.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
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3(비용추계서)

6.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7. 기타 참고사항 : 붙임4(관련부서 검토의견서)

붙임1

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월경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월경용품” 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 혈의 위생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.
2. “여성청소년” 이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 및 방법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경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 구입비 또는 월경용품의 이용권 [월경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 말한다]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월경용품의 지원대상,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월경 용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
 2.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탁) 시장은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교육 및 홍보) 시장은 월경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실태조사 등) 시장은 월경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중복지원 금지)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. 단,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환수 등)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포상)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, 단체,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임 안 자	시 의 원	나정숙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63)

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8-528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. 12. 7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있어 민간위탁을 제한하고, 각종 포상의 근거가 되는 별도의 포상 조례가 있는 바, 포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민간위탁에 관한 조항 삭제(안 제5조)
- 포상에 관한 조항 삭제(안 제10조)

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**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
과 같이 수정한다.**

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
한다.

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제9조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<p><u>제5조(위탁) 시장은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	<p>〈 삭제 〉</p>
<p><u>제6조 ~ 제9조 (생 략)</u></p>	<p><u>제5조 ~ 제8조 (원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)</u></p>
<p><u>제10조(포상)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월경 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, 단체,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</u></p>	<p>〈 삭제 〉</p>
<p><u>제11조 (생 략)</u></p>	<p><u>제9조 (원안 제11조와 같음)</u></p>